

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(김동율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774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4월 10일

발 의 자 : 김동율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정태, 조규영, 이명희,
강성언, 이병해, 김동욱,
김선갑, 한명희, 김기대,
김광수(도봉), 김영한,
문형주, 이현찬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재난 및 사고 등의 발생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력은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난 및 사고 등의 현장에서 시민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·운영함으로써 안전한 서울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재난 및 사고 등 현장에서 시민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시민안전파수꾼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(안 제1조)

나. 시민안전파수꾼의 실천사항에 대해 규정함.(안 제3조)

- 다. 시장에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, 매년 양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규정함.(안 제4조 및 제5조)
- 라. 시민안전과수꾼 양성을 위한 초기대응교육을 구분하고, 이에 필요한 전문 강사 육성·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6조)
- 마. 매년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함.(안 제7조)
- 바.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시민안전과수꾼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.(안 제8조)
- 사. 시민안전과수꾼에 대해 수집한 개인정보가 분실·누출 등이 안 되도록 규정함.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
 - (1) 신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 - (2) 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 - (3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 - (4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난 및 사고 등 현장에서 시민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시민안전과수꾼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초기대응교육”이란 재난 및 사고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위기상황판단 및 응급처치를 통해 자신은 물론 이웃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.
2. “시민안전과수꾼”이란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제1호의 초기대응교육을 수료하고 시민안전과수꾼이 되기로 동의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시민안전과수꾼 현장) 시민안전과수꾼은 다음 각 호를 실천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.

1. 가정·직장·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관리 생활화
2. 이웃과 소통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전과 화합 도모
3. 위험요소 사전예방활동 참여
4. 재난 및 사고 초기대응활동 참여
5. 성숙한 시민 안전의식 선도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안전과수꾼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, 재정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계획수립)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및

운영 계획(이하 “양성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양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시민안전과수꾼 양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2.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및 활동 현황
3.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계획
4. 시민안전과수꾼 강사 육성 및 역량강화 방안
5. 그 밖에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초기대응교육) ① 시민안전과수꾼 양성을 위한 초기대응교육은 기본교육, 심화교육,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초기대응교육을 위해 전문 강사를 육성·활용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초기대응교육의 이수과목, 이수시간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평가) 매년 양성계획에 따른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양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8조(자문단 구성 및 운영)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시민안전과수꾼 정책자문단(이하 “자문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자문단으로 참여한 위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」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보안) 시장은 시민안전과수꾼에 대해 수집한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누출·변조·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